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2. . .	
연월일	(제 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12.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종 보건위기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범정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의료와 요양의 연계 및 재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청년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의료보장심의회,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각각 폐지하며,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4. ~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관”을 “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제3항에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17의3.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7의4.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필수의료지원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필수의료지원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국에 필수의료총괄과를 둔다.

②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필수의료지원관은 제15조제3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필수의료총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총괄
3. 필수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상황의 점검 및 이행관리
4.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과제의 발굴
5. 필수의료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
6. 필수의료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7.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재평가 및 사후관리
8. 필수의료 관련 실태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수의료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⑦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⑧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별표 4 중 총계 “864”를 “868”로 하고, 일반직 계 “854”를 “85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23”을 “82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320”을 “318”로 하고, 일반직 계 “320”을 “3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16”을 “314”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5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8. 제45조제8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립소록도병원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6]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4조의3제4항 및 제44조의4 제6항 관련)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20
일반직 계	20
3급 또는 4급 이하	20

2. 필수의료지원관(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3. 필수의료총괄과(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8
일반직 계	8
4급 이하	8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감사관) ① (생략)	제5조의2(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u>차관</u> 을 보좌한다.	② ----- -- <u>장관</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③ ----- -----.
1. ~ 21. (생략)	1. ~ 21. (현행과 같음)
<u>21의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1의3.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1의4.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2. ~ 28. (생략)	22. ~ 28. (현행과 같음)
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② (생략)	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u> · 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u><신 설></u>	<u>1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u>
제17조(보건산업정책국) ①·② (생 략)	제17조(보건산업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7의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7의3.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7의4.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의료보장심의관 등) ①	<u><삭 제></u>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의료보장심의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국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	

를 둔다.	
② 의료보장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의료보장심의관은 제15조제3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되,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예비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상급병실 급여화에 관한 사항	
3.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대상 선별 기준 및 발굴에 관한 사항	
4.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동향 모니터링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재평가 및 결과 적용에 관한 사	

항

6. 그 밖에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 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

2.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정보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사항

⑦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⑧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4(필수의료지원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필수의료지원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국에 필수의료총괄과를 둔다.

②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필수의료지원관은 제15조제3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필수의료총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의 총괄

3. 필수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의 점검 및 이

제45조(한시정원) ① ~ ③ (생략) ④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9월 11일까지 별표 7에	<u>행관리</u> 4.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과제의 발굴 5. 필수의료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 6. 필수의료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7.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재평가 및 사후관리 8. 필수의료 관련 실태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수의료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 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⑦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한시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⑥ (생략) <신 설> <신 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⑧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
---	--	--	---	--

	<u>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u> <u>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u> <u>다.</u>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864</u>	<u>868</u>	+4
·	·	·	
·	·	·	
일반직 계	<u>854</u>	<u>858</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23</u>	<u>827</u>	+4
·	·	·	
·	·	·	

[별표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0</u>	<u>318</u>	-2
일반직 계	<u>320</u>	<u>318</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16</u>	<u>314</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3